(재)거제시희망복지재단 공고 제2020-1호

2020년 나눔 공모사업 공고

(재)거제시희망복지재단에서는 거제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자 나눔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 내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

2020년 2월 13일

(재)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<mark>생</mark>(함당) 등 (재)

1. 사업개요

사업명	예산규모	사업기간
나눔공모사업	50,000천원	2020년 4월 - 11월

2. 신청자격

- 거제시 소재로 사회복지사업,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<u>비영리 법인·기관·</u> 단체·시설(개인 신고시설 포함)
- ※ 제외대상
 - 3년 연속 지원한 동일(유사) 사업
 -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단체장을 임명하는 기관· 단체 등
 -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확정된 사업

- 법령상 금지된 행위에 사용되는 비용
- 정치·종교적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경우
-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
- 「공직선거법」에 위반되는 경우
-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수탁운영 시설·기관

3. 지원내용

○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변화를 위하여 단발성·이벤트성 사업이 아닌 지역사회 내 파급력 있는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향후 모델화 가능한 사업

4. 지원한도 : 기관당 8,000천원 이내

5. 신청 및 제출서류

○ 신청기간 : 2020.2.13.(목) ~ 2.26.(수) 18:00까지

○ 신청방법 : 이메일(ghwf@hanmail.net) 접수

O 제출서류

구 분	수량	비고
① 공문	1부	
② 나눔공모사업 신청서	1부	
③ 기관현황	1부	
④ 사업계획서	1부	
⑤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	1부	
⑥ 기타(해당서류)	각1부	
- 법인등기부등본 - 시설신고증 사본 - 고유번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		 별도 신고증 없이 운영법인으로 소속되어 운영되는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제출 (분사무소 포함하며 최근 3개월 이내) 시설신고증은 없지만 정부에서 신고시설로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류 제출 (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, 시설허가증, 지자체 공문 등)

6. 심사 기준 및 방법

- 심사기준 : 기관의 신뢰성 및 사업수행능력, 사업의 적합성, 필요성 및 적절성, 기타 일관성 및 실현가능성 등 종합고려
- 심사과정 : 예비심사, 서류심사, 면접심사

※ 사업의 특성에 따라 심사과정을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의 평균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며 적합한 프로그램이 없을 시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
7. 기타 및 유의사항

- O 1개소 1사업 신청 원칙
- 최초 지원을 포함하여 동일사업으로 3회까지 신청 및 지원 가능함
- 동일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 중 사업장의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기관 및 시설은 개별적으로 신청가능
- 제출 서류 누락시 심사에서 탈락되며 신청서 등의 기재사항 착오, 누락, 허위기재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기관의 책임으로 함
-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선정여부와 관계 없이 반환하지 않음
- 수행기관 선정 후라도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선정취소 또는 환수함
- ② 최종 선정기관에 대해 지원금액 등 조정될 수 있으며 추후 조정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
- 자부담 재원으로 경상운영보조금은 편성불가함
- 예산편성기준표 참조하여 작성
- 사업계획서 작성시 본문 내용은 글씨체 굴림, 11포인트로 작성하며 한글파일로 제출

8. 사업일정

일 자	내 용	비고
'20.2.13.(목) ~ 2.26.(수)	· 공고 홍보 및 안내 · 신청 및 계획서 접수	
'20.2.27.(목) ~ 3.13.(금)	·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	
'20.3.16.(월) ~ 3.27.(금)	· 선정기관 발표 · 전달식 · 조정사업계획서 접수	
'20. 4월 ~ 11월	· 사업수행 · 중간점검 및 현장모니터링	
'20.12.11.(금)	· 결과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	
'20.12.21.(월) ~ 12.31.(목)	· 사업 결과보고회 및 심사 · 사업 결과보고 및 정산서류 검토 및 평가	

[※] 사업일정은 추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등 별도 공지

예산편성 기준표 예시

항	목	기 준	사용한도	비고
	특별 강사	전/현직 장/차관(급) 이상 전/현직 대학총장(급) 전/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(회장) 또는 국영기업체장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시민단체,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로 재단이 인정하는 자	· 1시간 최대 350,000원 · 초과 매시간당 150,000원	
	1급 강사	 대학 조교수 이상,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인간문화재,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기업/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, 중역 판/검사,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/5급 공무원 사회복지 기관시설장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시민단체,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 기타 재단이 인정하는 자 	· 1시간 최대 250,000원 · 초과 매시간당 150,000원	* 유급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(동일법인이라도 사업장의 위치가
강 사 비	2급 강사	 ・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・ 전현직 4/5급 공무원 ・ 중소기업체 임원급 ・ 기압기관단체의 부장급 ・ 체육, 레크레이션 등 전문강사 ・ 인간문화재유명예술인 등 보조출연자 ・ 통계이론,SAS,SPSS 등의 전문가 ・ 박사학위소지자 ・ 특별강사, 일반 1급 및 일반 3급을 제외한 자 ・ 사회복지 기관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 ・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, 시민단체,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 ・ 기타 재단이 인정하는 자 	· 1시간 최대 230,000원 · 초과 매시간당 120,000원	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 기관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) * 강의에 필요한 교재의 원고료, 강사 교통비(실비)는 필요사유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
	3급 강사	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전임이외의 외래시간 강사 외국어/전산 등 학원강사 사회복지 기관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가 없는 자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, 시민단체,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 기타 재단이 인정하는 자 	· 1시간 최대 170,000원 · 초과 매시간당 100,000원	

단순인건비	· 1인/1일 (1일 8시간 기준/ 중식비 포함) ※ 월 60시간, 1개월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필수	 단순인건비 76,220원 (중식비 7,500원 포함) 주휴수당 68,720원 ※ 2020년 최저임금에 따라 변경 	
원고료	 · A4용지 1매 기준 글자크기 13p, 줄간격160%, 상하여백 15, 좌우여백 25, 머리말·꼬리말 15, 또는 300단어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3면을 A4 1면으로 산정 원고지로 작성한 경우에는 200자 원고지 3.5매를 A4 1면으로 산정 	· 12,000원 · 시간당 6매까지만 인정 최대 30만원까지 지원	
식사비	· 1인 기준	· 10,000원	
다과비	· 1인 기준	· 4,000원	